

정 관

올릭스 주식회사

제정 2010. 02. 26.
개정 2015. 07. 17.
2016. 03. 24.
2016. 10. 07.
2017. 02. 02.
2018. 01. 03.
2019. 03. 19.
2021. 03. 29.
2022. 03. 28.
2023. 03. 2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올릭스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Olix Pharmaceuticals, Inc." (약호: Olix)라 표기한다(이하 "이 회사" 또는 "회사"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약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2. 신규 약물전달체계 및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3. 신약, 백신, 혈청 및 항독소 등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연구 개발, 제조, 판매업
4. 생리활성 물질(항생제,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호르몬제, 단세포균항체, 백신, 진단제)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5. 진단용 의약품 및 광역학 치료제(광감각제, 조영제, 형광내시경제제, 진단 및 치료용 광소재)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6. 바이오관련 나노구조체제조사업
7. 진단용 의약품 제조, 판매업
8. 바이오센서 제조 및 판매업
9.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10.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11. 관련 연구용역 및 서비스업
12. 관련 용품의 수출입, 도소매업
13. 부동산 임대업
14.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 내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 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olixpharma.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이 회사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회사가 발행하는 각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과 다른 종류주식이 혼합된 종류주식의 수를 포함한다)는 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와 법령상 달리 허용되는 한도 중 더 높은 범위 내로 한다.
- ④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에 관한 주식이나 상환에 관한 주식과 혼합된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의 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 ① 이 회사는 이익배당에 있어서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종류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0%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에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⑤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⑥ 우선주식은 제8조의 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8 조의 3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① 이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 2. 자본금의 감소
 - 3. 정관의 변경
 - 4. 재무제표 등의 승인(이익배당 포함)
 - 5. 이사보수한도 승인
 - 6.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권 변동, 소유구조 내지 지배구조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
 - 7.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제 8 조의 4 (이익배당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이 회사는 이익배당에 있어서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며,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회사상환주식"이라 한다) 또는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주주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이하, 아울러 "상환우선주식"이라 한다).
- ②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8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 ③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가액의 연 10%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회사상환주식의 경우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 ⑤ 이 회사는 회사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주식의 취득일 2주간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

야 한다. 분할 상환하는 경우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⑥ 주주는 주주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 청구의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이 경우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⑦ 이 회사는 회사상환주식 또는 주주상환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 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상법 제 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⑧ 상환우선주식은 제8조의 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8 조의 5 (이익배당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이 회사는 이익배당에 있어서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 또는 주주가 회사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아울러 "전환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8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 ③ 전환기간, 전환청구기간 및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는 주주권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전환비율의 조정 조항을 둘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 1.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 정한 사유
- ⑦ 전환우선주식은 제8조의 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⑧ 전환우선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6 (이익배당,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이 회사는 상환우선주식과 전환우선주식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전환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8조의 4 제2항 내지 제7항과 제8조의 5 제2항 내지 제6항, 제8항을 준용한다.
- ③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제8조의 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0 조 (신주의 발행 및 배정)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1호 내지 7호 어느 하나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3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0 조의 3 (신주의 동등배당)

이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 11 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의 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 ①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②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원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3 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2월(또는 365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2월(또는 36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 (소집시기)

이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회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 사 • 이 사 회 • 대 표 이 사

제 29 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30 조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 회사의 이사 중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선임 결의일 기준 이 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열회사에서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적이사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1항, 제4항 및 동조항의 변경, 삭제 또는 이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조항의 신설에 관한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정관 변경의 효력은 이를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일 익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 30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이 회사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0 조의 3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이 정관 제29조 본문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 단서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2 조 (대표이사의 선임과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며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33 조 (이사의 직무)

- ①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회에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이 늦어도 그 48시간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6 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 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 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 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 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7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7 조의 2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경영위원회
 - 2. 연구위원회
 - 3. 인사위원회
 -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5. 내부거래위원회
 - 6. 보상위원회
 -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를 정하고 늦어도 그 48시간 전까지 각 소속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8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한다.
- ② 이사의 유족·재해보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유족보상금 규정에 의한다.
- 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 38 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8 조의 3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 사

제 39 조 (감사의 수)

이 회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제 39 조의 2 (감사의 선임·해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하며,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9 조의 3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 39 조의 4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9조의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9 조의 5 (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⑧ 감사에 대해서는 제34조 제3항,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의 6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회 계

제 40 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매기말에 결산한다.

제 41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부분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해당 각 서류를 승인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3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1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 43 조의 2 (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이 정관은 2010. 2. 26.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 7. 17.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 3. 24.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 10. 7.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 2. 2.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 1. 3.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 3. 19. 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전 정관의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와 개정된 정관의 제9조, 제11조, 제16조의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 3. 29.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2 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2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2. 3. 28.>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 규정은 2022. 3. 28.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후단 및 제39조의 후단은 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9.>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 규정은 2023. 3. 29 부터 시행한다.